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2. 11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21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0. 3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국장 유옥준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(2022.08.11.시행)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운영비의 지원 및 범위 신설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기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안 제6조, 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(2022.08.11.시행)에 따른 조례의 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함.
 - 안 제5조는 운영비의 지원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함을 신설함.
 - 안 제1조, 안 제6조, 안 제8조는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번호 변경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.
- 검토 결과
 - 본 조례안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 하도록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이 개정(2022.08.11.시행)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,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이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7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(시행일: '22.8.11.)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영등포구체육회,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태권도시범단 정의 별도 세분화(안 제2조)
- 나. 영등포구체육회,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 신설(안 제5조)
- 다. 기타 제5조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 및 자구 수정(안 제1, 5의2, 6, 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22. 09. 15. ~ 10. 05./ 20일간) 결과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 「학교체육진흥법」 ”을 “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비영리법인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영등포구체육회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

나. 가목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된 스포츠 종목단체

다. 구에 소재지가 있는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태권도시범단

제5조를 제5조의2로 하고,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운영비의 지원 및 범위)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 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상근직원 인력운영비
2.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
3. 사무실 임차료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

제6조제1항 중 “제5조제2항”을 “제5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5조”를 “제5조의2”로, “하계하거”를 “하계 하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 「학교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체육단체”란 체육 전반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된 <u>비영리법인</u>이나 단체를 말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 <u>「학교체육진흥법」</u>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</u> ---- -----.</p> <p>가. <u>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영등포구체육회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</u></p> <p>나. <u>가목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된 스포츠 종목단체</u></p>

<신 설>

4. (생 략)

<신 설>

제5조 (생 략)

제6조(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)

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제5조제2항의 생활체육교실, 건전여가교실(이하 “교실”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⑥ (생 략)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체육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

다. 구에 소재지가 있는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태권도시범단

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운영비의 지원 및 범위) 구청장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에 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상근직원 인력운영비
2.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
3. 사무실 임차료
4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

제5조의2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제6조(생활체육교실 등의 운영)

① ----- 제5조의2 제2항-----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----- 제5조의2----- 하거나

할 수 있으며,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